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2소위03-산01호
민원표시 2AA-2212-0029359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신청인 A
피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결일 2023. 1. 16.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0. 0. 서울 (주소 생략)에서 컨설팅업(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1. 0. 0. 폐업하였으나 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2. 0. 0.로 폐업일을 정정하였다. 신청인은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초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거절을 2022. 0. 0. 최종 통보하였는데, 폐업일 결정은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이므로 변경된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르면 2021. 12. 31. 이전 폐업한 사업체는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보전금을 신청할 당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 폐업일은 그 이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의 지급요건에 따르면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장인데 이 민원 사업장의 당초 폐업일은 2021. 0. 0.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관할 세무서장이 정정한 폐업일인 2022. 0. 0.을 실제 폐업일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19.상반기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우리 위원회가 2022. 0. 0. 이 민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초 2021. 0. 0. 같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22. 0. 0. 같은 세무서장에게 폐업일 정정을 요청하였고 같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폐업 전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폐업 이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폐업일 정정이 필요한 상황, 신청인과 발주자간의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폐업일 이후 사업계속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폐업일을 정정처리 하였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2020년 및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매출내역>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게 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점, ② 신청인이 비록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보전금 지급거절을 통보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 정정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에 따른 폐업일 정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소관사항인 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를 통해 폐업일을 직권으로 정정한 이상 이를 전제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폐업일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정정된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 2020년 상반기 매출은 00,000,000원이고, 2021년 상반기 매출은 00,000,000원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 ⑫ 생략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임1, 불임2, 불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황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불임5)
 -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노래)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사, • 안마사, • 상점·마트·백화점, • 일용사업체 • 직할판매부서,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박물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시설 인원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사, • 안마사,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 • 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할판매부서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박물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경륜식장, • 강습식장, • 동양지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영화제독시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 • 학술행사장 |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임5)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불임5)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불임4)
 -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를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
'19년	'21년	45%	

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황지원	일반	상황지원	일반	상황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1}	1,000	800	800	700	700	600
	△40% ^{※2} ~60% ^{※3}	800	700	800	700	700	600
	△40% ^{※4}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불임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불임6)
 -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계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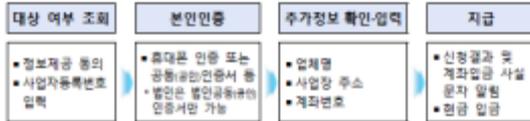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대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1) 신속지급

- 대상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글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절차】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대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당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 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프레스, 연박 및 석유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약품 불활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철사제품, 압류의 열상, 열합 및 용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랙터 등의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6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숙박 및 음식점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축산 및 음식제조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수선)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업(세탁 및 보비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벨트 봉이 및 용이제품 제조업	C17	
4 저가 섬유 제조업	C24	
5 천기장비 제조업	C28	
6 가죽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알류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000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크리스탈 및 석유정제물 제조업	C19	
14 화장품 및 화장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인쇄기능제품 제조업(인쇄 및 사무 제품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부속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급장치 공급업	D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식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약품 불활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류, 직물,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K(E36 제외)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항공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2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O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보수)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L	400억원 이하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년 이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 11월 이전	'19. 상반기	20.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상반기		
	'19. 하반기	20. 하반기		
		21. 하반기		
'19. 12월~'20. 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20. 상반기	21.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하반기		
20. 하반기	21. 하반기			
	21년	21년		
'20. 12월~'21. 5월	21. 상반기	21. 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하반기		
'21. 6월~'21. 10월	21. 7~11월	'21. 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11월~'21.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우점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제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기업 역할부터 신청한 개월 수 격화(예 : '19. 9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 간이과세자 연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합입자의 '21. 7~11월 대비 '21. 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제점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채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입액 여부 확인 후 지급(영입액 부채원을 위한 기준 충족 별도 안내 예정)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채시 (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채시 지원 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기업 역할부터 신청한 개월 수 격화(예 : '19. 8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8}$)
 ② 「과세인프라」는 국제점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소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 ①, ②를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채시 (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채시 지원 제외
'21년 11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기업 역할부터 신청한 개월 수 격화(예 : '19. 8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8}$)
 ② 「과세인프라」는 국제점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제조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도장 소매업	
	노력 연습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연세점	
	수영장 운영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전거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보험 시스템 서비스업	보험 시스템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무도 유희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 유희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략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방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안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표면처리 및 특수 직물 제조업	
사격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한 캠프용 안전기 제조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합의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농림, 임업 및 어업	철수선 수선시설 운영업	합의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육양업	
	작물재배 및 축산 비하농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붙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임대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공예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임대매 도매업
46333	임대 도매업 * 임대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유류제품 도매업 * 단, 인조유류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업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음주영업
56212	무주류음주영업
58122 중	경매, 경매, 경매 관련 장치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모바일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주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9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률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집행통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호신수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플라자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나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청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청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종계탈,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추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스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월 16일